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- 849호

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공람 공고

1. 우리구 상도동 282-23번지 일대 「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
2. 본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동작구청 도시전략사업과(☎820-1137)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8월 30일
동 작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18.08.30. ~ 2018.09.28.(공고일 포함 30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전략사업과(☎02-820-1137, 동작구청 별관 4층)
빙수골 주민협의체 거점공간(성대로 6사길 14)

다. 공람사유 :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라. 공람내용 : 빙수골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

①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

1. 정비구역 지정 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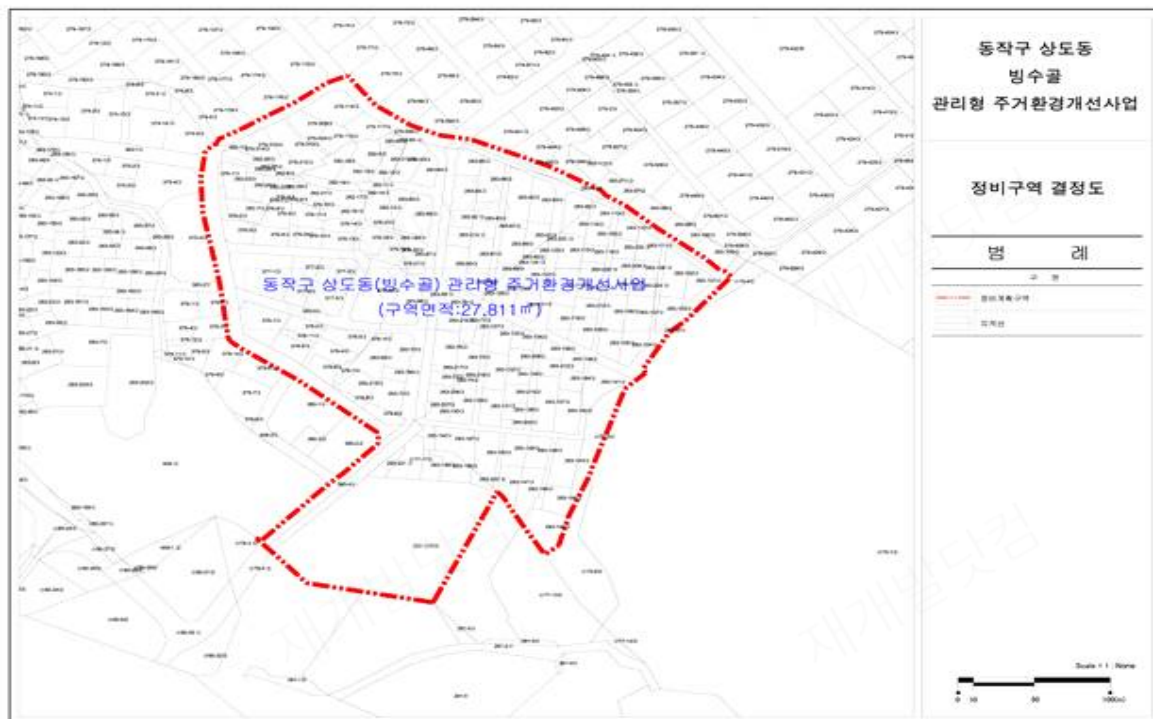
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규	동작구 상도동 (빙수골)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	동작구 상도동 282번지-23 일원	-	27,811	27,811	

나. 정비구역 지정사유

구 분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 설	동작구 상도동 282-23번지 일원	27,811	•본 대상지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·정비·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•이에 따라,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, 경쟁력 있는 마을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물리적, 사회적,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다. 신청도면(정비구역결정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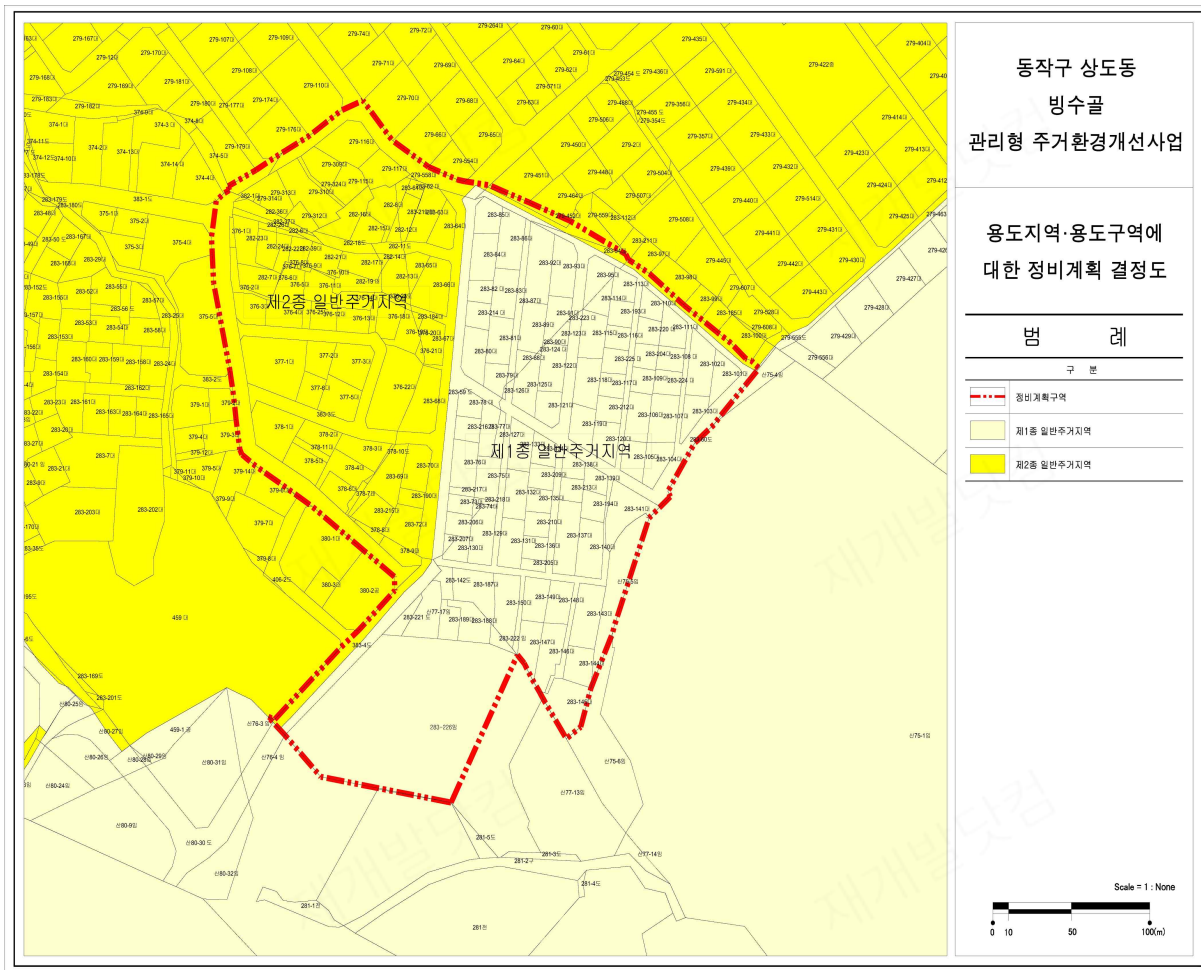
②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
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27,811	-	27,811	10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16,021	-	16,274	58.5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1,537	-	11,537	41.5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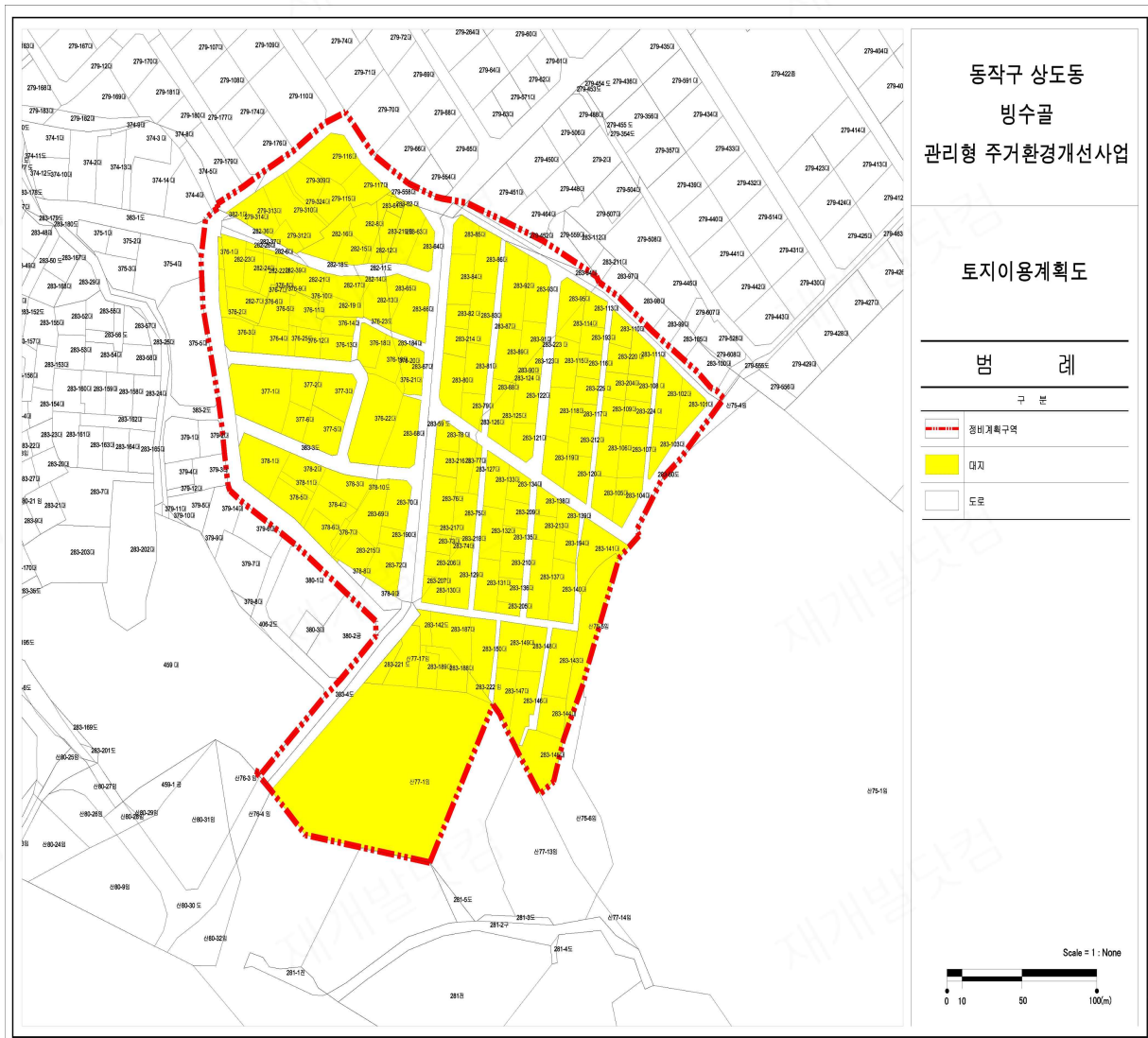
▣ 용도지역 현황도



2. 토지이용계획

구분		면적(m ²)	비율(%)	비고
합계		27,811	100.0	
정비기반시설 등	소계	6,949	25.0	
	도로	6,949	25.0	
	주민공동이용시설	-	-	
대지	소계	20,862	75.0	
	대지	20,862	75.0	

□ 토지이용계획도



3. 도시계획시설[정비기반시설] 설치계획

가. 도시계획시설 [도로] 결정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	7~9	국지 도로	121	상도동 283-59	상도동 279-20	일반 도로			신규부여
변경	소로	2		7~9	국지 도로	201	상도동 283-59	상도동 384-3	일반 도로			도로연장 (추가80m)
기정	소로	3		4~5	국지 도로	63	상도동 283-60	상도동 283-94	일반 도로			신규부여
기정	소로	3		3~4	국지 도로	155	상도동 283-60	상도동 283-59	일반 도로			신규부여
기정	소로	3		3~4	국지 도로	50	상도동 283-59	상도동 282-18	일반 도로			신규부여
변경	소로	3		3~4	국지 도로	82	상도동 283-59	상도동 383-1	일반 도로			도로연장 (추가30m)
기정	소로	3		3~4	국지 도로	14	상도동 283-59	상도동 383-3	일반 도로			신규부여
기정	소로	3		4~5	국지 도로	58	상도동 283-226	상도동 383-4	일반 도로			신규부여
신설	소로	3		6~7	국지 도로	93	상도동 279-20	상도동 383-4	일반 도로			도시계획시 설 (도로)결정

■ 변경사유서

구분	위치	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고
	기점	종점			
기정	소로	2	● 도로번호 신규부여	● 기 결정된 도로이나 도로번호 미부여로 신규부여	
변경	소로	2	● 도로연장 (추가 80m)	●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연장	
기정	소로	3	● 도로번호 신규부여	● 기 결정된 도로이나 도로번호 미부여로 신규부여	
기정	소로	3	● 도로번호 신규부여	● 기 결정된 도로이나 도로번호 미부여로 신규부여	
기정	소로	3	● 도로번호 신규부여	● 기 결정된 도로이나 도로번호 미부여로 신규부여	
변경	소로	3	● 도로연장 (추가 32m)	●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연장	
기정	소로	3	● 도로번호 신규부여	● 기 결정된 도로이나 도로번호 미부여로 신규부여	
기정	소로	3	● 도로번호 신규부여	● 기 결정된 도로이나 도로번호 미부여로 신규부여	
신설	소로	3	● 도로신설	● 현재 사용중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도모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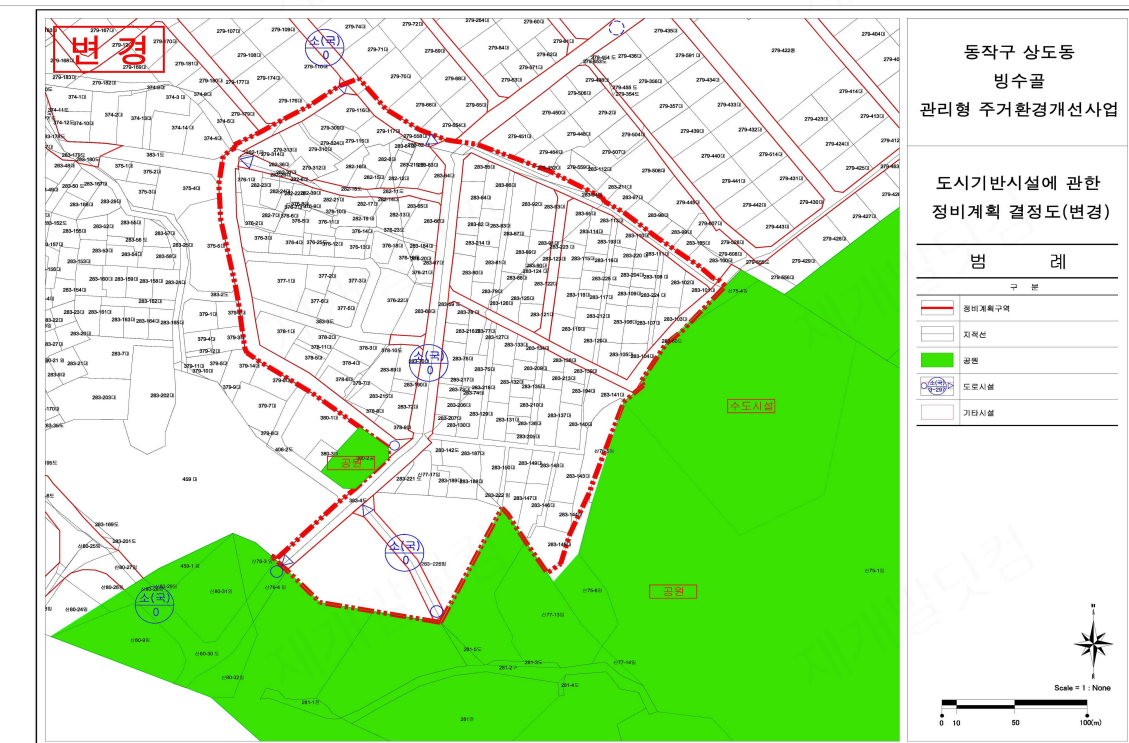
동작구 상도동 빈수골
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

도시기반설에 관한
정비계획 결정도(기정)

범		례	
구		분	
	정비계획구역		기타시설
	공원		개발지역
	도시시설		

Scale = 1 : None

0 10 50 100m



4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- ▣ 향후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운영관리방안 및 부지확보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함

5.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

- ▣ 기존의 생활권과 가구 및 획지 등의 기존형태를 가급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가. 공동개발

- ▣ 필지 간 합필 또는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가구단위를 초과할 수 없음
- ▣ 현재 가구 단위 내에서의 자율적인 공동개발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도동 고유의 경관 보전, 골목길 보행통로 조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함을 권장함
- ▣ 공동개발 시 가로변을 기준으로 좌우측 인접건축물과의 맞벽건축을 통해 대지 내 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, 맞벽건축 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소유주 간 건축협정을 체결해야 함

구 분	적용구역	계획내용	비 고
자율적공동개발	정비계획구역전체	가구단위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	-

구 분	적용대상
권 장	· 동일 소유자 필지, 기 공동개발 필지간의 공동개발 · 과소필지(90㎡ 이하), 단독개발이 어려운 부정형 필지간의 개발
불 허	· 공동개발로 인하여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하거나 세장비(단변과 장변의 비)가 1:3 이상이 되는 경우 · 공동개발로 인하여 인접필지가 맹지화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

6. 건축물에 관한 계획

가. 건축물의 주용도

- ▣ 대상지 내 건축물의 주용도는 제1,2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도 유지
- ▣ 관련법에 따른 용도지역·지구별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 따라 계획하며, 정주환경의 보호를 위해 일부 용도를 제어함
- ▣ 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제1,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입 가능한 용도에도 불구하고, 정비계획에서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음
- ▣ 사업 대상지와 인접하여 당곡중학교, 당곡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, 대상지는 상대 정화구역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▣ 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불허하는 용도는 다음과 같음

건축법상 용도분류	불허 용도
제1종 근린생활시설	아. 변전소
제2종 근린생활시설	마. 총포판매소 사.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

구 분	내 용
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(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)	• 배출허용(규제)기준과 행위 및 시설(대기·악취·수질·소음·진동) •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, 고압가스·천연가스·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• 제한상영관, 도축장, 화장장, 납골시설, 폐기물수집장소, 폐기물처리시설, 폐수종말처리시설, 축산폐수배출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,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 가공·처리 시설, 감염병원, 감염병격리 병사, 격리소, 감염병요양소, 진료소, 가축시장 •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, 호텔, 여관, 여인숙 • 당구장, 사행행위장·경마장·경륜장 및 경정장,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게임물 시설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•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7)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) 또는 9) 및 같은 호 나목7)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•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, 만화가게, 무도학원·무도장, 노래연습장업 시설, 담배자동판매기, 비디오물감상실업, 비디오물소극장업,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

나. 건축물 높이계획[의무사항]

▣ 관련법령에서 용도지역·지구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밀도기준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을 준용

▣ 일조피해를 받는 건축물이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관계없이 일조기준을 준수

1) 건폐율 및 용적률

▣ 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은 현행 용도지역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

-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: 60%이하(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)
-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: 150%이하(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)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: 60%이하(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)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: 200%이하(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)
- 제2종 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의 층수 준용

2) 높이 및 일조사선제한

▣ 건축물의 높이는 용도지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높이기준(7층 이하)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,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및 86조,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,

및 제35조에 따름

구 분	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떨어지는 거리
높이9m 이하인 부분	1.5m
높이9m를 초과하는 부분	당해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/2 이상

다.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(권장사항)

1) 건축물 방향성

구 분	적용범위	계획내용
건축물 방향	구역전체	건축물 신축시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성 및 연속성 유지
건축물 배치	구역전체	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

라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(의무사항)

- ▣ 기본적인 지침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(제24조, 제30조)를 따름
- ▣ 대지 내 조경 및 녹화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마을분위기 및 가로환경 조성
- ▣ 녹화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마을 내 녹지확보율을 증가시킴

1) 대지안의 공지

- ▣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건축법 제58조, 시행령 제80조의2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에서 명기된 사항을 따름
- ▣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시 건축법 제5조(적용의 완화)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, 단 민법 제242조에 따른 최소 거리(0.5m) 유지 필수

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		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	
공동주택	다세대주택 : 1m 이상	전용주거지역 건축물 (단독주택)	1m 이상
		공동주택	다세대주택 : 1m 이상

2) 대지안의 조경

- ▣ 대지안의 조경은 전면가로에 면하여 조성하거나, 건물과 건물사이 공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을 권장
- ▣ 맞벽건축 시 골목 커뮤니티활성화 및 공간 활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공지

위치를 가로에 면해 이웃과 서로 연속하여 조성하도록 권장

▣ 대지 내 조경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(대지안의 조경)를 적용

연면적 합계	대지안의 조경비율	비 고
2,000㎡ 이상	대지면적의 15%이상	대지면적이 200㎡~300㎡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%이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조성
1,000㎡ ~ 2,000㎡미만	대지면적의 10%이상	
1,000㎡ 미만	대지면적의 5%이상	

▣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

▣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(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)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1/2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,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/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

마.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(권장사항)

구 분		비 고
외 벽	재료	- 대상지 배후에 있는 상도근린공원(국사봉)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소재(벽돌, 흙, 나무 등)를 사용할 것을 권장
	색채	- 중저명도 저채도의 일반적인 규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기타 재료들 사용시에는 원색계열의 강한 색상을 지양하고 저채도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
지 붕	재료	- 지붕의 재료는 과도한 반사성 재료를 지양하고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
	형태	- 경사지붕의 경우, 지붕의 경사도는 최소구배 3/10에서 최대구배 6/10의 내에서 계획하며 태양광 집광판 설치를 권장
	색채	- 지붕의 색채는 원색계열 사용을 지양하고, 저채도 중명도 색상을 사용하여 통일감 조성
부착 시설물	에어컨실외기 가스배관 전기개량기 등	- 에어컨 실외기, 가스배관, 전기개량기 등 외벽에 설치되는 부착시설물은 가로변에 보이지 않도록 가급적 건축물 측면 혹은 후면에 설치 - 간혹 공간이 부족하여 가로변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외벽의 재료 및 색채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폐시설(가림막)을 설치
녹화	옥상 담장	- 배후 산 조망이 가능한 경우 조망방향의 건축물 또는 조망축 변 건축물은 옥상녹화 및 담장의 녹화를 권장

바. 옥외광고물에 관한 결정조서

1) 일반사항

- 본 정비계획구역 대상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에 따라 업소 하나 당 간판은 총 1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자사광고에 광원(光源)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음
- 본 정비계획구역 내에 모든 옥외광고물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며, 「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」의 내용에 대해서는 준수를 권장함
- 영업 허가 전, 동작구 도시미관개선팀에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처리 시행을 권장함
- 조명은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하며,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함

2) 가로형 간판설치지침(권장사항)

구 분	비 고
규 모	- 가로형 : 가로크기는 건물벽면 가로 폭 80% 이내(최대10m), 세로크기는 입체형 · 판류형 각각 최대 45cm, 80cm 이내 - 연립형 가로형 : 간판 1개 규모는 0.5㎡ 이내, 총면적 8㎡ 이내,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
위 치	- 3층 이하에 표시 (3층에 표시할 경우 건물 가로폭의 1/2 이내로 표시) - 꼭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 - 둘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음
색 채	- 업소의 특성과 상호 또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개성적인 색채 - 지역특성 및 건축물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 -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포인트색으로 적용 - 재질 자체에서 오는 풍부한 느낌의 색채사용 권장
표기요소	- 상호 혹은 브랜드명 위주로 표기하여 여백 확보 - 업종의 성격이나 상호 및 브랜드에 어울리는 서체 사용 - 입체형 : 주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는 최대 45cm 이내, 보조 표기내용의 문자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/4 이내 - 판류형 :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1/3, 주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/2 이내, 보조표기내용 문자 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/6 이내
조 명	-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 · 점멸식 조명 지양 - 간판 전면 발광 금지, 간접 · 부분 조명 방식 지향

사.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

1) 생태면적률 (권장사항)

- ▣ 건축물 신축시 「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」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

건축유형	생태면적률 기준
일반주택(개발면적 660㎡ 미만)	20% 이상
공동주택(개발면적 660㎡ 이상)	30% 이상
일반건축물(업무, 판매, 공장 등)	20% 이상
공공·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	30% 이상

$$\text{생태면적률} = \frac{\text{피복유형별 환산면적} + \text{식재유형별 환산면적}}{\text{전체면적}} \times 100 = \frac{\sum(\text{피복유형별 면적} \times \text{가중치}) + \sum(\text{식재개체수} \times \text{환산면적} \times \text{가중치})}{\text{전체면적}} \times 100$$

주)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2016.04.

2) 자연지반 보존 (권장사항)

- ▣ 지하수 및 생태면적 확보,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지반의 보존 권장
- ▣ 대지 안의 공지는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초화류를 식재하고, 바닥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부분포장, 투수성 포장 권장
- ▣ 당해 지상부 자연지반을 보존할 경우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구조물(지하주차장, 저수조 등)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

3) 녹색주차장 (권장사항)

- ▣ 신축 시 주차장을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한 경우에는 녹색주차장 조성면적의 2/3를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음 (단,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 중 1/2을 초과 불가)
- ▣ 주차장을 투수성 재료로 개선함으로써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며, 녹색주차의 설치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」의 기준을 따름

4) 옥상녹화 (권장사항)

- ▣ 상도동의 건축물은 친환경적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녹화의 조성 권장
- ▣ 주변지역의 평지붕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증·개축하는 경우, 옥상(2층 이상의 옥외부 포함)의 평지붕 면적의 40%이상 조성 권장
- ▣ 옥상녹화 시 「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녹화 시스템 유형 결정과 관리 매뉴얼」에 따라 조성

5) 벽면녹화 (권장사항)

- ▣ 건축물의 벽면, 담장, 방음벽,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덩굴성 식물, 지피식물, 초화류 위주로 녹화하는 벽면녹화 권장
- ▣ 기타 벽면녹화 조성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추진지침」에 따라 조성

6)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(권장사항)

- ▣ 본 정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
- ▣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, 시설 및 관리기준 등은 「하수도법」, 「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, 「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설치·관리 가이드 북」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

7) 신·재생 에너지시설 (권장사항)

- ▣ 본 정비계획구역 내 일반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
- ▣ 신·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기준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을 따름

7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	적용구역	계획내용
환경보전		구역전체	• 주민휴게공간 조성 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• 옥상녹화, 신재생에너지 사용,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 조성
재난 방지	화재	구역전체	•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• 단지 내 소방차 진입공간을 충분히 확보 유도 • 화재발생 시 진화가 가능하도록 내부 골목길에 매설식 승하강 소화전 설치
	풍수해	구역전체	•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,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억제 • 구역 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• 붕괴위험 옹벽, 저지대 침수지역, 공사 등 사전예방 조치 • 풍수해 발생 시 긴급 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 체계 확립

8. 정비사업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	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	동작구청	-	
주택의 보전, 정비, 개량	계획 수립 이후	토지등 소유자	-	

9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- ▣ 상도동 282-23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중·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음

구 분	내 용
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)	※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,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.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·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1조제1항·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,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·매몰지 9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. 「축산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7)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), 가목9) 및 나목7)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,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(규모,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) 15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·보관·처분하는 장소(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) 16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

구 분	내 용
	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 18. 「담배사업법」에 의한 지정소매인,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)	19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 20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 2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, 무도학원 및 무도장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 22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,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 25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 26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(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)

구 분	내 용
	28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나목6)에 해당하는 업소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	29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

10.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

▣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, 개량,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

11.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▣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, 개량,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

12.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

▣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, 개량, 보존하는 사업으로서, 추후 사업 실행시 수목의 이전 및 존치 여부를 결정함

13.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

구 분	계획내용	비 고
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	- 주민공동체 운영을 위한 주민조직 창설 - 커뮤니티 공간 및 마을축제, 마을공동체 서비스, 마을기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·운영하는 주체	
마을공동체 운영계획	- 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 -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구상	
행정지원	- 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 - 주민상담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	